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19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김위상 · 이인선 · 우재준
김은혜 · 이달희 · 박성훈
조지연 · 서지영 · 김대식
김기현 · 안상훈 · 고동진
이진숙 · 김 건 · 구자근
박성민 · 유상범 · 신성범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특히, 최근에는 지방노동감독관제도 등의 도입이 맞물리면서 수사나 노동 행정 경험이 전무한 지방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여기에 수사 사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행정적 영향력이 개별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되거나 특정 이해관계와의 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 역시 정부 연구와 전문

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함으로써,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5조의10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하여야”를 “개시·진행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로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생 략) ② <u>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u> <u>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u> <u><신 설></u>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u> ③ ----- ----- ----- -----<u>개시·진행하여</u> <u>야</u>----. <u><후단 삭제></u> ④ <u>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u>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u>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 ---- <u>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u> ----- -----.